

경기도 대표 선수 선발 규정

2023.12.28. 제정

2024.11.09. 개정

1.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선발전 상위 입상자(개인종합1위~5위)로 5명 선발한다. 2명 추천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전년도 1차 평가전 기록은 참고로만 인정하며 당해 연도 선발전 상위 기록 선수를 최종 선발 추천한다. 만약 상위 순위가 대회 출전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선수가 출전한다.
선발전 1회 실시 체조 단체 종목 특성상(7명-5명-4명) 대회의 개인종합 상위 순위를 5명 선발하고 잔여 인원은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추천함. 부득이하게 선발전을 하지 못 할 경우에는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근거로 선발. 위원회의 운영방침에 비협조 또는 소집 불이행 시 선수 교체할 수 있다.

2.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 시·도대항 체조경기대회

- 경기도 선발전 상위개인종합점수 선수를 최종 선발한다.
- 시도대항 시에만 적용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시·도대항 체조경기대회

- 경기도 선발전(소년체육대회 선발전 결과로 정한다) 상위개인종합점수 5명 선수를 선발하고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며 학교에서 개별 출전한다. 만약, 상위 기록자가 본선 대회 출전을 포기할 경우 공문으로 협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순위 선수가 출전한다. (부상 선수 진단서 첨부)

4.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일반부 선수선발>

-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 KBS배전국기계체조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전국대학·일반선수권대회 이 3개 대회 예선 및 결승경기 상위 개인종합점수 선수를 선발한다.
- 체조종목특성상(7명-5명-4명) 대회의 개인종합 상위 순위 5명 선발하고 기계체조위원회에서 종목별 메달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2명을 추천한다.
- 위원회 운영방침에 비협조 또는 소집 불이행 시 선수 교체할 수 있다.

5. 선수선발 적용 기간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전국체육대회 전 국내 마지막 대회까지 적용한다.

6. 경기도 대표 지도자(각종 시도대항대회, 각종 캠프, 전지훈련 등)는 기계체조 위원회가 임의 선발한다.

- 경기도 대표 선수 및 지도자(각종 시도대항대회, 각종 캠프, 전지훈련, 기타 등등)는 기계체조 위원회에서 임의 선발한다.
- 선발기준 1. 출전대회 경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있는 선수 및 지도자
2. 선수와 동료 지도자 및 협회 간의 소통, 교류가 가능한 자
3. 지도자의 경우 경기도 대동심판을 제외하고 중앙단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경기도 대표지도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7. 경기도 대표 선발된 선수는 지급된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8. 대표지도자 소년·전국체육대회 의무(지침)사항

1. 선수 인권 침해 소지가 없는 선에서 생활 및 훈련 지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2. 담당하는 선수들의 경기 참여(소집)까지 책임을 다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최종 경기 결과는 사무국장에게 유선(전화) 또는 메시지로 경기 종료 즉시 결과를 전달한다.
4.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가 경기도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대회 전 대표지도자 미팅, 임원 격려 자리는 사전 전달된 특별한 사유 없이는 불참을 금한다.
6. 위 조항에 해당하는 지침 사항 위반 시 후시 대표지도자 선발에 제외될 수 있다.

※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시스템에 경기도 대표 종목별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는 지도자는 전국체육대회 관련한 각종 지원금 및 포상금 지급을 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